KOSHA GUIDE

C - 101 - 2022

장치를 부착하면 항발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.



〈그림 1〉 항타기



〈그림 2〉 항발기

- (라) "사업주"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관계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(항타기, 항발기)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, 그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- (1)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 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(가)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
 - (나)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
 - (다)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
- (2) 사업주는 (1)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